

## 범죄보도와 인권

平川宗信  
일본 名古屋 대학 교수

### 머리말

현재 매스컴보도에서 범죄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더 밝은 뉴스를」이라는 소리는 있어도 신문의 사회면이나 TV, 라디오의 뉴스에 범죄보도가 들어가지 않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보도는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유용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범죄보도는 ① 범죄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불려일으킨다. ② 시민들에게 범죄로부터 자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③ 형사사법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한 형사사법의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④ 범죄를 남게 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어 그 해결을 돕는다. ⑤ 사회의 현실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등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스컴에 「범죄자」의 오명을 남기는 일은 어느 누구도 싫어할 것이므로 범죄보도는 일반예방의 효과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범죄보도는 이상과 같은 유익한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널리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범죄보도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오고 있다. 특히 오보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든가 범죄보도에 의한 범죄자의 가족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간제는 매스컴과 인권과의 관계가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어왔던 과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범죄보도일반이 「범인」·피의자·피고인 등 이른바 「본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범죄보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게끔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보도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해야만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익명주의」의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그러한 의문이나 주장은 주로 마스크관계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마스크관계자들에게만 맡겨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며 우리들 형사법연구자를 법률적·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문제에 약간의 검토를 가하려는 것이다.

## 범죄보도와 인격권

범죄보도가 인권과 관련되는 점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것을 크게 나누어보면 범죄보도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와 범죄보도가 법의 통정한 수속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범죄보도와 인격권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은 범죄보도가 1인 또는 관계자의 사생활의 평온·프라이버시나 사회생활·사회복귀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이며, 주로 일본헌법 13조(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만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① 범죄보도에 의해, 본인은 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져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체면이 깎이고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된다. ② 범죄보도에 의해 범죄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잃고 절교, 거래정지, 따돌림 등의 사회적 보복이나 제재 또는 냉대를 받아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적지 않다. ③ 그 결과 사회복귀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④ 범죄보도에 의해 범죄 이외의 프라이버시가 폭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일 외에도 취재활동 자체에 의해서도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 ⑤ 오인보도나 오보의 경우에는 최초의 「범인」으로서의 보도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보의 문제를 때고는 종전에는 논의가 없었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사고가 지나친 취재나 보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준 데서 온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범죄를 범한 이상 그것이 보도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이익·사회적 제재를 받더라도 함구해야만 할 일이다. 가족이나 관계자도 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부득이하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수용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는 의문이 없을 수가 없다. 적어도 가족이나 관계자에 대해서까지 범죄보도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의 사고는 취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또 범죄자 본인에 대해서도 범죄를 범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이러한 불이익을 감양 시키는 것을 전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의 적정한 수속에 의해 과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형벌 이외의 제재를 과하는 경우에도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행위에 알맞는 합리적인 불이익을 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인이 단순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사형(린치)이며,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배제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범죄보도가 일으키는 「사회적 제재」는 사형이라는 주장도 반드시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적어도 범죄보도가 예전의 조리돌림의 형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매스컴의 판단으로 범죄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장된 바와 같이 범죄보도에서 실명주의(범죄보도는 원칙적으로 실명이어야 한다는 사고)를 배제하고, 익명주의(범죄보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원을 모르도록 해야 한다는 사고)를 채택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종전부터 큰 문제로 되어온 오보의 문제도 이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으로 실명주의를 채택하는 한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게 된다. 범죄보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구전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매스컴에 의해 사회 전체에 알려지는 것과는 그 영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사생활의 평온·프라이버시의 권리, 사회복귀의 권리라는 개인의 인권보호에 유익할 뿐 아니라 특별예방의 목적, 제재의 법률화·합리화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유익한 사고라고 생각된다.

## 범죄보도와 적정수속

범죄보도와 일본헌법 제 31 조(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밖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의 법의 적정한 수속의 보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관계에서는 ① 범죄보도가 재판관에게 예단을 주어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② 범죄보도에 의해 「악인」의 낙인이 찍혀 피고인측의 방어활동에 일반시민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진다. ③ 「유죄」를 전제로 한 보도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수사를 하도록 만든다. 특히 그것이 수사기관의 발표에 근거할 때에는 수사기관은 자승자박에 빠져 유죄로 하지 않는 한 체면이 서지 않는다. ④ 그러나 불기소, 무죄가 되었을 때에는 그 판단력이 의문시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래 이른바 「신문재판」 (Newspaper Trial)의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었다. 특히 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에서는 계심의 판단을 범죄보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영국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범죄보도에 대해 법정모욕죄에 의한 법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은 직업재판관제를 채택하고 있고, 직업재판관은 범죄보도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범죄보도의 재판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쪽을 중시,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해 범죄보도가 형사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른바 「천엽대 티푸스균사건」이 라든가 최근의 재심사건의 원재판·오보당시의 보도를 볼 때 범죄보도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익명이라든가 「유죄캠페인」을 벌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익명주의는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름을 밝혀서 추궁되는 것과 익명으로 추궁되는 것과는 시민의 수용방법이나 수사기관의 수용방법이 절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도하는 측도 실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정적인 보도로 흐르기 쉬운 데 반해 익명의 경우에는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보도로 다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익명주의 아래에서는 「유죄캠페인」, 「신문재판」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수속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익명주의에는 큰 장점이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 보도의 자유와 익명주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생각한다면 범죄보도는 익명주의어야 하며, 형사 정책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나 익명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이다. 일본헌법 제 21 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보도기관은 보도의 자유에 근거하여 범죄보도의 자유, 실명보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익명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점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이 문제는 익명주의를 둘러싼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과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라고 한다면 보도당하는 측의 인권도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대립은 헌법상의 인권과 인권과의 대립으로서 그 해결은 이 두개의 인권을 헌법상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견지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헌법론 레벨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정치가, 고급공무패,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라든가 일반공무원의 직무범죄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시민의 범죄는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태로 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헌법론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판단한다든가 의견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알 권리」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알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시민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를 해나가기 위해 필요불가결의 정치적 권리로서 다른 인권에 우월 하는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견지에서 표현을, 시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적으로 자치를 행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과를 구별하는데, 전자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면서 언제나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나, 후자는 상대적 가치를 갖는 데 불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고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표현의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조정의 이론으로는 그런대로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기준을 범죄보도에 적용시켜 보면, 시민은 정치가·고급공무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특히 중대한 것은 이른바 권력범죄이다 라든가 일반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민주적 인 시민자치를 행하기 위해 이를 엄격히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를 당연히 「알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알 권리」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당연히 실명보도가 원칙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반시민의 보통의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를 모르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포착하여 판단하는 데는 통상 불편은 없다 이것은 소년비행에 대해 현재 익명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 우리들은 실명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형태로 보도의 자유와 개인 인권의 보호와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범죄보도의 역할

현재 매스컴에서는 실명주의가 당연시되어 익명주의는 매스컴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상식」이어도 괜찮은 것일까.

매스컴 관계자는, 사람들은 실감 있는 생생한 뉴스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주의를 가지고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랑들이 정말 실명보도를 바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매스컴이 이전부터 실명보도는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범죄보도란 그러한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간과한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요구」도 매스컴 자신이 만들어 내는 면도 있지 않을까. 확실히 실명보도편이 프라이버시에도 터치하게 되어 흥미있는 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도 끌어들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데 불과한 것은 아닐까. 사람의 민권을 오락의 대상으로 하는 일은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익명주의를 가지고는 사회악에,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매스컴이 정의를 중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정책의 주체를 자부하여 범죄를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매스컴은 범죄자가 검거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정책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이 역할은 익명주의로서도 다할 수 있다 매스컴이 「실명」나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걸로 정의의 현현자 또는 범죄억지력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까. 매스컴이 올바르다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며, 보도를 두려워하여 범죄를 중지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본래 매스컴이 정의감을 갖고 대항해야 할 사회악은 「대악」, 「권력악」이며, 「소악」은 아니다. 일반범죄는 익명으로, 권력범죄는 실명으로 한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일반범죄의 추궁에 쏟았던 매스컴의 에너지를 권력악의 추궁에 돌려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매스컴의 사명의 핵심은 시민에게 민주적인 자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민이 정치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필요상 권력범죄나 공무원범죄를 실명으로 보도하는 자유는 항상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범죄자의 실명은 통상 시민이 자치출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시민이 민주적인 사회의 운영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개개의 범죄의 미세한 사실이 아니라 범죄가 갖는 사회적 의미이다. 매스컴은 개개의 사건을 표면적으로 추궁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하나의 사회간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적 관련 속에서 파헤쳐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익명주의는 매스컴을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

### 조사기관의 발표의 역할

범죄보도가 익명주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기관의 발표도 익명주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실명이어야 할 것이다. 조사기관은

실명으로 발표하고, 보도기관이 그것을 보도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해야만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름은 처음부터 익명으로 발표되어 정보조작의 염려가 생긴다. 또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는 경우에도 보도기관은 꼭 뒷받침이 될만한 취재를 한 후 보도해야만 한다. 뒷받침을 위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을 알 필요가 있다. 실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실명을 알기 위해 무리한 취재를 하게 되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인권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의 발표는 본래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며, 시민이 민주적인 자치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활동을 비판하는 자료가 되는 정보도 자진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선전, 자기정당화, 여론유도, 정보조작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경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도기관도 발표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의 취재, 보도를 하도록 주의해야만 할 일이다.

## 범죄보도규제의 존재양식

일반의 범죄에 대해서는 익명주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이것은 끝까지 매스컴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권력범죄등에 관해서는, 매스컴은 이를 실명으로 보도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익명주의를 법률로 강제할 때에는 매스컴은 만일의 처벌을 두려워하여, 이 보도를 유보할 우려가 있다. 또 한계료예에서도 상명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익명으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미묘하기만 하다.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매스컴은 위축된다. 매스컴에는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매스컴에 법규제를 가할 때에는 매스컴은 위축되며, 이러한 역할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도 곤란하게 된다. 매스컴의 법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의 영역을 부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매스컴은 범죄보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책임을 전면적으로 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매스컴은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여, 『보도평독회』 좌 같은 자율감시기관을 설치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범죄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를 자율규제할 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